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53호 2021. 8. 9.(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463호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하동군 조례 제2464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하동군 조례 제2465호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하동군 조례 제2466호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하동군 조례 제2467호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3
- 하동군 조례 제2468호 하동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15
- 하동군 조례 제2469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하동군 조례 제2470호 하동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23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1-15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26
- 하동군 고시 제2021-153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최분+) ····· 28
- 하동군 고시 제2021-156호 도로 노선의(변경) 고시 ····· 29
- 하동군 고시 제2021-16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31
- 하동군 고시 제2021-165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대치2 지구) ··· 33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21-1171호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6
- 하동군 공고 제2021-1236호 하동군 민원사무처리 수칙 외 1건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 42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1-1133호 산지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명령 공시송달 공고게시 의뢰 52
- 하동군 공고 제2021-1151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신기천 긴급정비사업) ····· 53
- 하동군 공고 제2021-1129호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차 제안 공고 59
- 하동군 공고 제2021-1186호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고 ····· 62
- 하동군 공고 제2021-1187호 2020년 1월 1일 기준 정정지가 결정·공시 ····· 63
- 하동군 공고 제2021-1208호 공인 신조 공고 ····· 64
- 하동군 공고 제2021-121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잔너리지구) 65
- 하동군 공고 제2021-1215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화포지구) · 67
- 하동군 공고 제2021-1234호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69
- 하동군 공고 제2021-1240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 75

회									
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63 호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5명</u>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위원장을 포함한 <u>3명의</u> 위원은 <u>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 중에서 위촉한다.</p> <p>2.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p> <p>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u>3명</u>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구성) ① ----- ----- ----- <u>7명</u> ----- ----- ----- ----- ----- -----</p> <p>1. ----- <u>5명의</u> 위원은 <u>판사, 검사, 변호사</u>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5명</u> ----- -----</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64 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 을 허가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 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u>상속으로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u></p> <p>3. · 4. (생 략)</p>	<p>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 ----- ----- -----.</p> <p>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3. · 4. (현행과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65 호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5명 이내”를 “7명 이상 15명 이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하동군 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하동교육지원청 학교 체육 관계자
 3.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협의회)의 설치)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체육진흥협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7조(협의회)의 설치) ①----- ----- ----- ----- ----- 둔다.</p>
<p>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u>15명 이내</u>로 구성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제9조(구성) ① ----- ----- <u>7명 이상 15명 이하</u> ----- ----- -----.</p>
<p>② <u>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u></p>	<p>② <u>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하동군 체육회 회장으로 한다.</u></p>
<p>1. <u>하동군의회 의원</u> 2. <u>하동교육지원청 학교체육 관계자</u> 3. <u>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u></p>	
<p>③ <u>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u></p>
	<p>1. <u>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u> 2. <u>하동교육지원청 학교 체육 관계자</u> 3. <u>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u></p>

④ (생 략)

<신 설>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의 체육진흥 및 지
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
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66 호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입장료의 감면) 재단은 하동군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등) 재단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편의 등 제공) ① 재단은 행사기간 중에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군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측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도민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
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
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

③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0조(입장료의 감면) 재단은 하동군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1조(보상금 등) 재단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2조(편의 등 제공) ① 재단은 행사 기간 중에 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시·군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 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도민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 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 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 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시 제공

③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
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
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67 호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

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표창)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68 호

하동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하동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활동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헌혈장려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헌혈장려활동의 기본방향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헌혈장려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헌혈장려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장려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헌혈장려활동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

나. 하동군의회의 의원

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대표 등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2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장려활동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활동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고아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69 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을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p><u>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u></p> <p><u>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u></p> <p><u>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u></p> <p><u>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u></p>	<p><u>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u></p>	<p><u>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u></p> <p><u>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u></p> <p><u>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u></p>	
<p><u>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u></p> <p>가. 30일 이상 90일 미만</p> <p>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p> <p>다. 180일 이상 1년 미만</p> <p>라. 1년 이상</p>	<p>법 제20조제1항 제2호</p>	<p>50만원</p> <p>83만원</p> <p>167만원</p> <p>333만원</p>	
<p><u>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u></p> <p>가. 연 1회 위반한 경우</p> <p>나. 연 2회 위반한 경우</p> <p>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p>	<p>법 제20조제1항 제5호</p>	<p>80만원</p> <p>200만원</p> <p>500만원</p>	
<p><u>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u></p> <p>가. 1회 위반한 경우</p> <p>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p> <p>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p>	<p>법 제20조제2항</p>	<p>25만원</p> <p>45만원</p> <p>100만원</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 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p> <p>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p> <p>2. ~ 6. (생략)</p>	<p>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 ----- ----- ----- ----- ----- ----- ----- 1 ----- -----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u>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u>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 -----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 --.</p>
<p>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② (생략)</p>	<p>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제24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24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8월 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70 호

하동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해상안전보안관”이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안전보안관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해상안전보안관

제5조(해상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상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해상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해상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해상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현지 바다지형에 밝은 지역주민으로써 해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6. 해군 전역자 및 해경 퇴직자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7.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해상안전보안관의 활동) 해상안전보안관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낚시객 및 낚시어선 등 안전계도
2. 해안 안전시설물 점검 및 순찰
3.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 보호 관련 활동
4. 해상 안전 관련 위반 행위 신고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활동지원 및 관리

제7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 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및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군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2021 - 152호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1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1917-105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1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덕윗담길 10-1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7.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755-1, 754-1, 755-4, 756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1917-105	20210715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 19-3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273-64	20210715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63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954-28	20210715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368-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178-41	20210715		20090702	정기룡장군 추모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208-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370-18	20210715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수곡면) 활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23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854-23	20210715		20090702	동학전적지인 고성산 지남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83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길 184-214	20210715		20070618	고이라는 법정리명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85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길 106	20210715		20080402	뒷산이 병풍처럼 싸여져 있고 앞 냇물이 휘어 들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851-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길 105	20210715		20080402	뒷산이 병풍처럼 싸여져 있고 앞 냇물이 휘어 들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13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57-56	20210715		20080402	넓고 비옥한 평야를 상징한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지역특성을 합성하여 북방우회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548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36-41	20210715		20070618	원우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덕윗담길 12-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덕윗담길 10-1	20210715	동일지번 내 2가구 건축물 소재	20080402	명덕마을고유명칭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명덕윗담길로 명명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덕윗담길 12-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명덕윗담길 12-1	20110729		20080402	명덕마을고유명칭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명덕윗담길로 명명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하동군 고시 제2021 - 153호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5일

하 동 군 수

1. 허 가 번 호 : 2021-03
2. 사 업 목 적 : 농지조성
3. 위 치 : 화개면 부춘리 477(임)번지
 화개면 부춘리 산65번지
 화개면 부춘리 산66번지
4. 사업시행면적: 984㎡
5. 총 사 업 비 : 금50,700,000원
6. 사 업 기 간 : 2020. 04. 13. ~ 2021. 06. 30.
7. 사 업 의 효 과: 개간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8. 사 업 시 행 자: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21번길 10, 209동 904호 최분순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도로 노선의 [] 지정
[√] 변경 고시
[] 폐지

하동군 고시 제2021-156호

도로법 []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 제21조제3항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 지정
[√] 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폐지

2021 년 7 월 20 일

하동군수

구 분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3호	3호
노선명	고절~운암	고절~운암
기점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산50-1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586-13
종점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393-5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393-5
주요 통과지	적량면, 고전면, 양보면	적량면, 고전면, 양보면
총연장(킬로미터)	5.9km	5.6km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군도18호(고전면 성천리)
	연장 (킬로미터)	0.4km

작성방법

1. 지정국도는 기존 일반국도 노선번호에 "-중 지정국도"를 추가하여 기입합니다.(예시: 일반국도 제1호 중 지정국도)
2. 기점·종점은 행정구역을 읍·면·동 및 지번까지 적고, 주요 통과지 및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은 읍·면·동까지 적습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1 - 162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40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6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개고개길 12-12 외 3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7.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330-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40	20210730		2009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면의 "양"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776-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길 118-31	20210730		20080402	두방산과 두방재 아래에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35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태봉길 24-32	20210730		20100517	마을의 뒤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584-9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57	20210730		20140701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716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74-43	20210730		20090302	북쪽에 있는 큰 고개라고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105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935	20210730		20090702	예전의 고속도로 기념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726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1길 50-10	20210730		20070618	매화꽃이 흐르는 계곡에서 유래된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48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해안길 90-26	20210730		20090302	해변을 끼고있는 마을의 의미를 유지코자 중평해안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2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931	20210730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12-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길 14-2	20210730		20080402	주포 마을내 중앙길로 주포중앙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학리 612-10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마치길 21-21	20210730		20070618	마치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116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동촌몰랑길 105	20210730		20080402	동촌이라는 자연마을명에 고유지명을 합성하여 동촌몰랑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2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경서대로 653	20210730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 25-1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273-35	20210730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268-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061-13	20210730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8-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49-2	20210730		20070618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개고개길 12-12	20210730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감나무골길 32-67	20210730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갈성길 51	20210730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폐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동곡길 82	20210730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하동군 고시 제 2021 - 165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변경 사유	비고
		구분	유형	등급	면적 (㎡)		
대치2 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70-21번지 일원	당초	침수 위험, 해일 위험 지구	다	390,000	- 해안가 저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외수(남해)의 영향으로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시 농경지, 양식장, 원예작물 수출단지 등의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 - 해수의 월류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 가중	
		변경	침수 위험, 해일 위험 지구	다	4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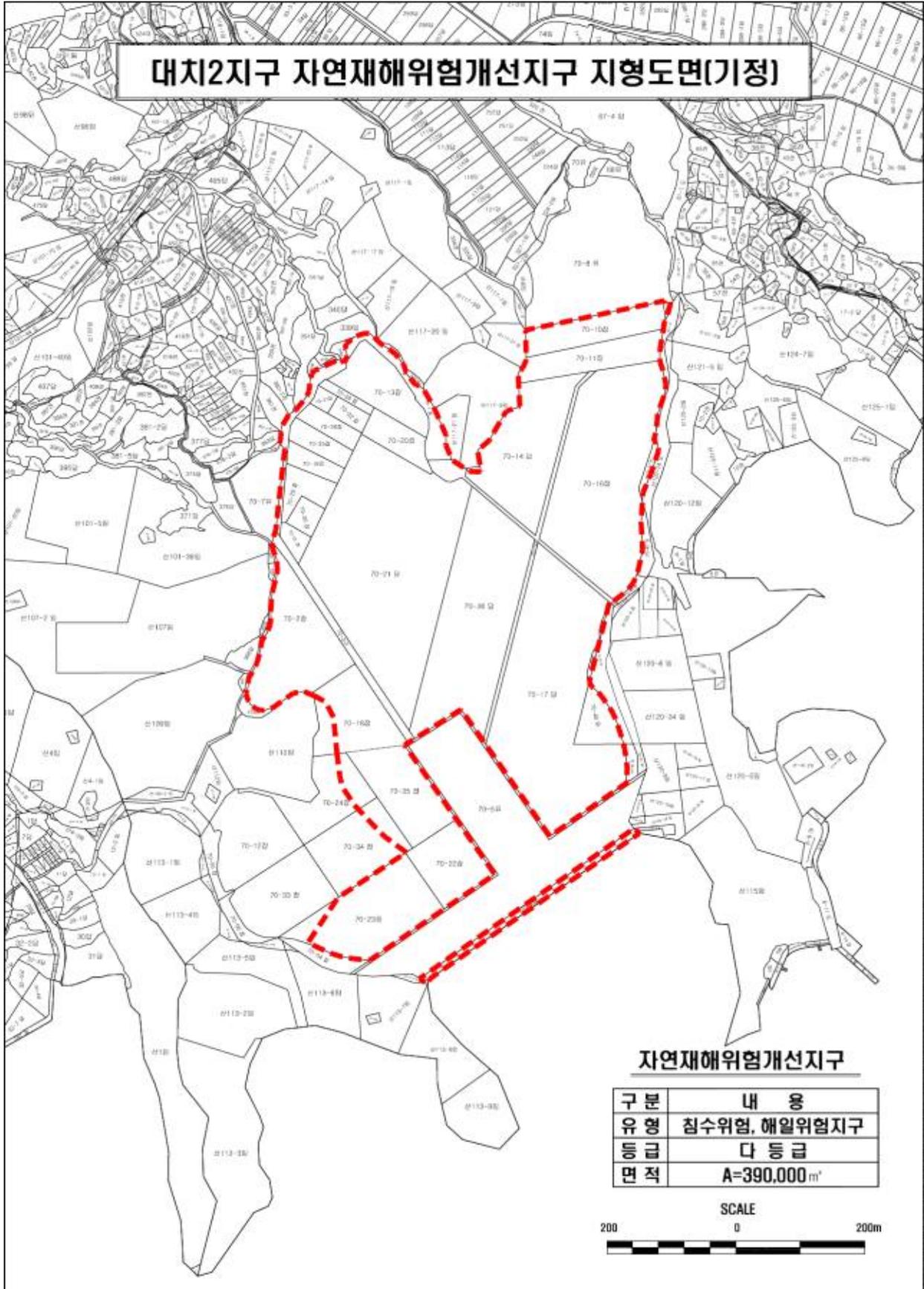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도면 1부.

2021. 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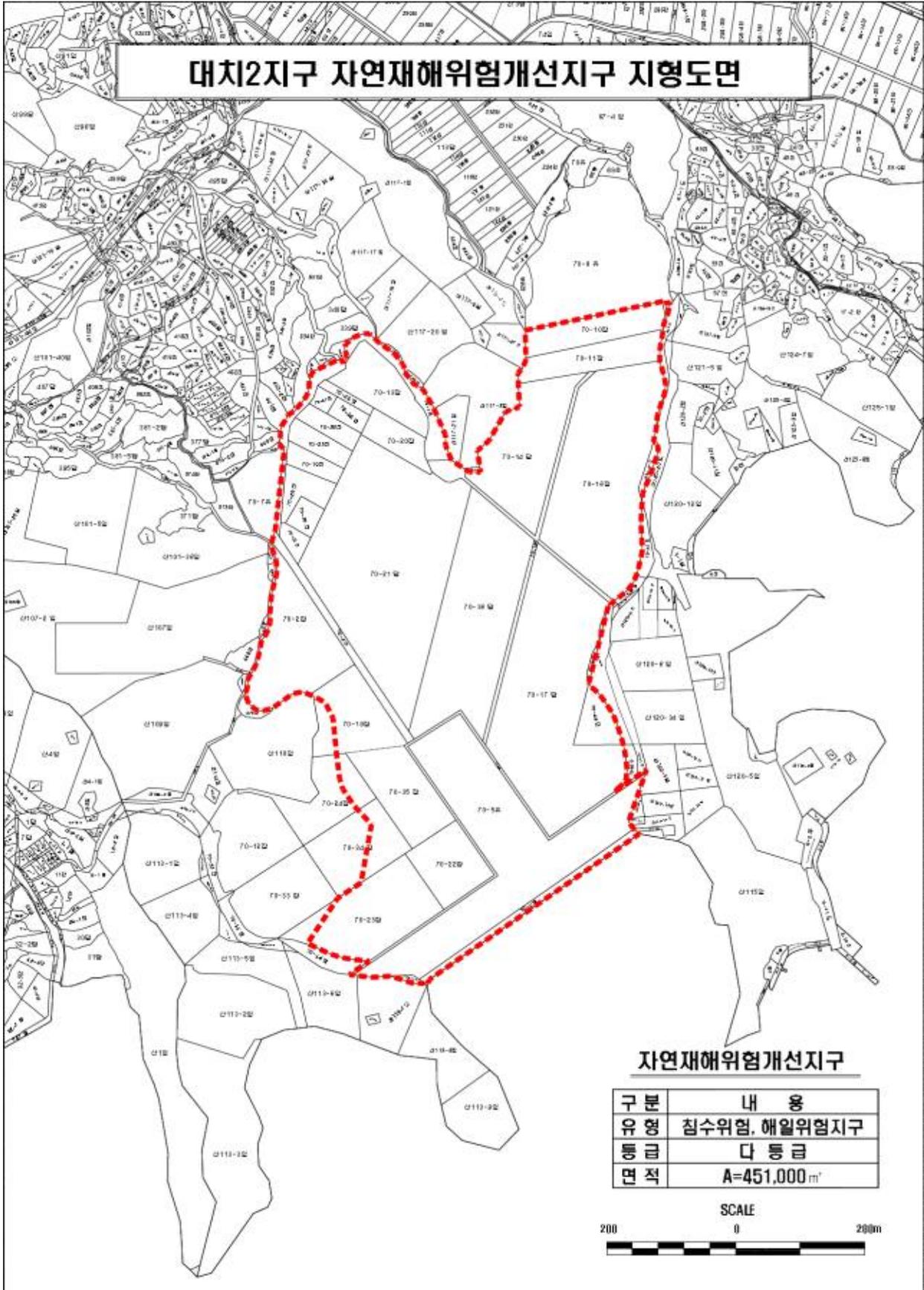
하 동 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변경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도면(변경후)



하동군 공고 제2021-1171호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년 7월 2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온종일 돌봄(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880-2319, FAX 880-2159, e-mail soso0095@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하동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 4. 온종일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 5.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서비스
-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역 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 국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군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업무의 장과 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업무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법인·단체 관계자
3.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
4.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업무 담당이 한다.

제8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⑤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1-1236호

「하동군 민원사무처리수칙」과 「하동군 민원실 운영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하동군 민원사무처리수칙과 하동군 민원실 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일

하 동 군 수

1. 행정규칙명: 「하동군 민원사무처리 수칙」 「하동군 민원실 운영규정」

2. 제안이유

- 동 훈령의 목적에서 명시한 외형적인 친절과 형식적인 민원사무 처리를 지양하고 민원의 유형 처리기준 등 민원사무 처리수칙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로 명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하동군 본청직속기관의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가능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훈령을 폐지코자 함.

3. 주요내용

- 「하동군 민원사무처리 수칙」과 「하동군 민원실 운영규정」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 이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8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민원과, 전화880-2071, FAX 880-2078)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민원사무처리수칙과 하동군 민원실 운영규정을 폐지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붙임1-폐지안]

하동군 훈령 제 호

하동군 민원사무처리 수칙 폐지규정안

하동군 민원사무처리 수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훈령 제 호

하동군 민원실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하동군 민원실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관련법령 검토사항]

하동군 민원사무처리 수칙

(전문개정) 1998.10.10 훈령 제 191호

(일부개정) 2002.12.23 훈령 제 223호

(일부개정) 2006.10.02 훈령 제251호 <제명>

(일부개정) 2013.04.10 훈령 제301호 하동군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하동군 민원사무처리수칙	관련법률
제1조(목적) 외형적인 친절과 형식적인 민원사무 처리를 지양하고 민원인이 처리된 내용에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민원사무 처리로 행정풍토 쇄신을 정착시키고자 민원사무 처리수칙을 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수칙에서 민원서류라 함은 민원과에 직접 접수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서류와 산하 하부기관에서 전달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2.12.23., 2013.4.10.>	
<p>제3조(민원의 유형) 민원서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마을사업에 관한 건설 및 지원요청 2. 시책 건의 3. 부당행정행위 시정 4. 공무원 비위 5. 범법자 처벌 및 각종 단속 6. 지방세 질의 및 심사 청구 7. 일반행정에 대한 질의 8. 주민등록에 관한 질의 9. 인가·허가 신청 10. 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요청 	<p><민원사무처리 법률></p> <p>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반민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 (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

	<p>속 기관</p> <p>나. 공공기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p>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p>제4조(접수)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일보를 군수에게 보고[별지 제1호서식]한다. <개정 2002.12.23., 2013.4.10.></p>	<p><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p> <p>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p>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p>

<p>제5조(선열) 접수된 민원서류를 별표의 민원서류 처리기준표에 따라 반드시 선열을 실시한다.</p>	
<p>제6조(처리기준) 민원서류는 별표의 민원서류 처리기준표에 따라 처리하되 선열권자가 처리방법을 지정한 민원은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특히 공무원의 비위 및 업무 부당처리에 관한 진정, 탄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서의 차상급 기관 또는 그 이상의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p>	<p><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p>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p>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행정기관의 장은 별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p>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현장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5.> ⑥ 민원인은 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감독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p>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p>
<p>제7조(배부) 민원과에서는 선열권자의 처리기준 결정 내용을 명시하여 소관 실과소에 즉시 배부한다. <개정 2002.12.23., 2013.4.10.></p>	<p><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민원의 접수) ①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병무(兵務)·인감·세무관계 등 취급 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p>
<p>제8조(처리결과 확인) ① 소관 실과소장은 지정된 기일 내에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하단의 민원서류 처리카드를 처리 즉시 민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 ② 민원과장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통지된 민원서류카드에 따라 처리결과를 확인 민원사무 처리부를 정리한다. <개정 2002.12.23., 2013.4.10.></p>	<p><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민원 처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p>
<p>제9조(보복행위의 방지) ① 민원서류처리 담당공무원은 처리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출원을 이유로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처분 또는 불유쾌한 언행 등을 엄금한다. ③ 민원사무심사관은 문서 시행 시 민원서류 회시문 하단에 다음 내용의 주인을 날인(인가·허가는 제외)하여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본 민원서류의 처리과정에서나 종결된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p> </div>	
<p>제10조(시정조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직접 조치하여야 한다.</p>	
<p>제11조(부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하동군 민원실 운영 규정

(제정) 1993.05.17 훈령 제 127호
 (일부개정) 1998.10.10 훈령 제 190호
 (일부개정) 2002.12.23 훈령 제 223호
 (일부개정) 2006.10.02 훈령 제 250호

(일부개정) 2013.04.10 훈령 제301호 하동군 규정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하동군 민원실 운영 규정	관련법률
제1조(목적) 규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하동군 민원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제2조(설치장소)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1층에 단독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실 형편상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의 방문빈도가 높은 해당 실과소 사무실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담당직원의 배치) ① 민원실에는 8급 공무원 중에서 심성이 착한 자를 배치한다. 다만, 8급 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적의 조정 배치할 수 있다. ② 담당직원은 군수의 명을 받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담당직원은 단독사무실이 아닌 다른 과내에 민원실이 설치되어 혼합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소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담당직원은 민원접수 처리 상황을 매 일과 후 민원사무심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상기 각 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06.10.2.>	<p><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p>
제4조(민원서류 접수) ① 민원서류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6.10.2.>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	<p><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p>

<p>한 건의</p> <p>6.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 <개정 2006.10.2.></p> <p>7.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06.10.2.></p> <p>② 제1항의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민원사무 처리부에 접수하고 담당직원은 1시간 이내에 처리 주무과에 이송해야 한다.</p>	<p>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 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p>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p> <p>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p>
<p>제5조(신청서등의 비치) 민원실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와 필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p>	<p><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p> <p>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p>
<p>제6조(편람 및 기준표 비치) 민원실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사무편람, 처리기간, 수수료기준표를 비치하여야 한다.</p> <p>제7조(편의시설) ① 민원실에는 1일 평균 민원인수를 감안하여 필수면적 확보 이외에 다음 시설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대 기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친근한 민원대 나. 민원서식함 및 기록대 다. 생활정보자료비치대 라. 민원안내판 마. 공중전화 바. 대기의자 사. 선풍기 및 난방시설 아. 음료수대 자. 증지판매소 차. 복사기 등 2. 10대 권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민원인용 전용주차장 나. 자동판매기 다. 우체국분국 라. 민원접수 표지판 마. 민원안내 컴퓨터 바. 아가방 사. 휴게시설 아. 체력검사기구 자. 장애인 편의시설 차. 물품보관함 	<p><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이하 “민원편람”이라 한다)을 열람(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람에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p> <p>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2. 제5조에 따라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3. 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구술(口述)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8조(민원사무심사관) ①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과 장으로 하고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각 실과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2.12.23., 2013.4.10.>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서류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임민원사무심사관 또는 처리주무과장에게 독촉장을 발급한다.

③ 민원사무심사관은 처리기간의 경과 등 법령위반사항과 부당처리가 있다고 민원인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조치사항과 함께 군수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민원심사관의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할 수 있다.

② 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1-11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42조(복구준공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 명령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16일

하 동 군 수

1. 제 목: 산지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명령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소재지	면적 (㎡)	수허가자		공시송달사유
		주소	성명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291-1(산211)	6,487	경산시 경산로	이*규	반송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하자보수 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③ 제42조제1항 ③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④관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한다.
6. 의견제출처: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 (하동군 군청로 23)
7. 공고기간: 2021.07.16..~2021.07.31..(15일간)
8.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9. 문 의 처: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 ☎ 055)880-2143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21 - 1151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하천 정비 시행(신기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하동군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지점	끝나는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신기천	신기천 정비사업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819-1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23-1	1.0	1.0	· 전석쌓기 L=1.019m · 교량5개소 · 낙차공6개소	'21.8.	'22.8.	소하천 정비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신기천 긴급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1.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신기천 긴급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819-1 ~ 안심리 23-1번지
 - 사 업 량 : 하천정비 L=1,019m(좌안 L=654m, 우안 L=365m), 교량 5개소, 낙차공 7개소
 - 사 업 비 : 1,354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819-1 ~ 안심리 23-1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21. 8. ~ 2022. 8.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3)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계	2021년	비 고
1,354	1,354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21년 8월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055 - 880 - 2532~5)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위 치 도



< 신기천 긴급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 유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	진교	안심	556	구	24,162	1,897	국(국토교통부)	
2	하동	진교	안심	557	도	2,526	104	국(국토교통부)	
3	하동	진교	안심	556	구	24,162	330	국(국토교통부)	
4	하동	진교	안심	557	도	2,526	120	국(국토교통부)	
5	하동	진교	안심	556	구	24,162	461	국(국토교통부)	
6	하동	진교	안심	557	도	2,526	70	국(국토교통부)	
7	하동	진교	진교	819-5	천	918	39	국(국토교통부)	
8	하동	진교	백련	765-15	구	938	93	국(국토교통부)	
9	하동	진교	백련	769-1	도	2,080	13	국(기획재정부)	
10	하동	진교	백련	769-1	도	2,080	27	국(기획재정부)	
11	하동	진교	백련	765-15	구	938	47	국(국토교통부)	
12	하동	진교	진교	819-5	천	918	51	국(국토교통부)	
13	하동	진교	진교	819-5	천	918	142	국(국토교통부)	
14	하동	진교	백련	765-15	구	938	123	국(국토교통부)	
15	하동	진교	백련	9-2	도	116	45	국(국토교통부)	
16	하동	진교	백련	10-1	도	7	7	국(국토교통부)	
17	하동	진교	백련	7-2	도	2,569	454	국(국토교통부)	
18	하동	진교	백련	766	도	641	559	국(국토교통부)	
19	하동	진교	백련	765-39	구	436	229	국(국토교통부)	
20	하동	진교	진교	819-11	천	849	468	국(국토교통부)	
21	하동	진교	진교	797-11	구	526	72	국(농림축산식품부)	
22	하동	진교	진교	840	도	14,132	4,181	국(국토교통부)	
23	하동	진교	진교	819-1	천	32,515	33	국(건설교통부)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하동	진교	안심	23-1	답	1,411	49	유재0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00-0
2	하동	진교	안심	24-6	답	885	122	엄영0	진주시 상대동 000-0 상대한보타운 000-000
3	하동	진교	안심	24-5	답	1,259	63	이정0	진주시 이현동 9-13 주공아파트 0동 000호
4	하동	진교	안심	24-1	답	3,464	91	김금0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3동 000-00
5	하동	진교	안심	25	답	215	87	빈남0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000
6	하동	진교	안심	24-1	답	3,464	25	김금0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3동 000-00
7	하동	진교	안심	26	답	73	72	김금0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3동 000-00
8	하동	진교	안심	27	답	109	16	김금0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3동 000-00
9	하동	진교	안심	4-1	답	2,347	241	황경0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00-0
10	하동	진교	안심	8	답	2,883	21	황경0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00-0
11	하동	진교	안심	42-1	답	2,410	92	정용0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000-0 송정아파트 000
12	하동	진교	안심	41-1	답	3,580	18	김윤0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000
13	하동	진교	안심	2	답	519	76	조임0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00, 000호(암남동, 송도탑스빌아파트)
14	하동	진교	안심	10	답	2,460	160	김점0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00
15	하동	진교	안심	1	전	245	245	강수0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00-0
16	하동	진교	안심	산7	임	24,595	62	이태0	경기도 여주시 능현2길 000-00 (능현동)
17	하동	진교	안심	11-3	답	2,618	152	유재0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00
18	하동	진교	안심	산7	임	24,595	13	이태0	경기도 여주시 능현2길 000-00 (능현동)
19	하동	진교	진교	산10-1	임	2,579	182	이태0	경기도 여주시 능현2길 000-00 (능현동)
20	하동	진교	백련	13	답	3,031	27	정순0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000
21	하동	진교	진교	754-1	전	140	112	진현0 외 1인	하동군 진교면 금오산길 000-0
22	하동	진교	진교	754-3	잡	706	15	진현0 외 1인	하동군 진교면 금오산길 000-0
23	하동	진교	백련	9-5	전	1,006	178	정정0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00
24	하동	진교	백련	10-2	전	575	498	이신0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00-0
25	하동	진교	진교	756-4	잡	1,250	78	김인0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000-0
26	하동	진교	진교	797-1	답	2,800	284	고석0 외 2인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000
27	하동	진교	진교	797-2	답	1,964	82	강인0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000
28	하동	진교	진교	797-3	답	1,666	54	박소0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길 00, 000동 000호(정남빌리지)
29	하동	진교	진교	797-12	답	357	13	박소0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길 0, 000동 000호(정남빌리지)
30	하동	진교	진교	797-4	답	2,912	5	쥬보0 산업개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0

하동군 공고 제2021-1129호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7월 26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7개면)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제안방식)
- 사업규모

구분	시설용량(m ³ /일)				오수관로(km)	펌프장(개소)	배수설비(개소)	비고	
	계	기존	증설	신설					
합계	4,690	2,400	1,490	800	118	66	3,378		
공공하수	금성STP	800	-	-	800	36	23	1,508	신설
	진교STP	2,000	1,300	700	-	29	14	736	증설
	화개STP	750	500	250	-	-	-	-	증설
	금남STP	550	400	150	-	9	8	202	증설
소규모하수	전도STP	330	110	220	-	28	17	651	증설
	직전STP	120	45	75	-	12	4	223	증설
	목계STP	140	45	95	-	4	-	58	증설
통합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1식(금성하수처리시설)								

- 추정 총사업비 : 130,365백만원 (2018.09.01. 기준 불변가격)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시운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하동맑은물주식회사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없음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 까지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 까지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62)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분리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부문)평가를 실시함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29)를 제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답변통보 :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6.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수도사업과(☎ 055-880-2605)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62)로 문의 바람

하동군 공고 제2021 - 1186호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제출된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고합니다.

- 1. 가 격 기 준 일 : 2021. 1. 1.
- 2. 조정 지가 결정·공시일 : 2021. 7. 30.
- 3. 조정 지가 결정·공시 필지수 : 7필지

(단위 : 원/m²)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당초 결정지가	조정 결정지가	비 고
1	화개면 범왕리 1642	임야	1,570	1,710	
2	화개면 범왕리 1642-1	임야	520	566	
3	적량면 서리 산74	임야	822	855	
4	고전면 전도리 279-1	잡종지	68,300	4,780	
5	금남면 송문리 617-2	전	38,500	33,800	
6	진교면 안심리 산63	임야	1,510	787	
7	양보면 운암리 657	전	15,000	14,500	

4. 행정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055-880-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3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 2021- 1187호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가격기준일 : 2020. 1. 1.
2. 정정지가 결정·공시일 : 2021년 7월 30일
3. 정정지가 결정·공시 필지수 : 1필지

정정 년도	토지소재지	지목	결정지가 (원/m ²)	정정지가 (원/m ²)	비 고
2020	고전면 전도리 279-1	잡	65,300	4,950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오류정정

4. 행정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055-880-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3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1-120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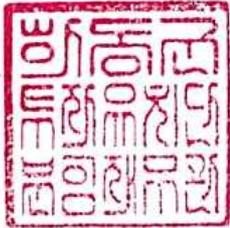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

하 동 군 수

1. 공인 사용일 : 2021. 8. 2.
2. 신조사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 부서(과) 신조등록
3. 신조(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글씨체 및 규격	인영	비고
신 조	하동군 투자유치단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하동군 투자유치단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하동군 공고 제 2021 - 1214호

잔너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잔너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3일

하 동 군 수

1. 목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1. 8. 3. ~ 2021. 8. 22.(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1. 8. 3. ~ 2021. 8. 22.(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잔너리 지구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일원	침수위험	가	363,842	잔너리 지구는 밀집주거지의 지반고가 주교천, 고전천 계획홍수위에 비해 낮아 자연방류가 어려워 대덕1배수펌프장을 운영중이나 용량이 부족하여 내수침수가 발생하며, 펌프장 유수지 유입을 위한 배수로의 배수용량 부족 및 수로경사불량(역구배)로 인해 호우시 일부구역에 반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실정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잔너리	2022년 ~2027년	41,880	- 지방하천 정비 L = 7.88km - 교량 2개소, 취수로 1개소 - 배수펌프장 증설 1개소 - 배수로 정비 L = 2.92km - 유수지 증설 V = 27,500m ³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 전화 : 055) 880-2513 팩스 : 055) 880-25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1. 의견 제출서(서식) 1부.
2. 지형도면 1부 . 끝.
3. 편입토지 세목조서 1부.

하동군 공고 제 2021 - 1215호

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화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3일

하 동 군 수

1. 목적 : 화포지구는 남해 대조평균만조위보다 저지대에 위치하며 자연방류가 어려워, 집중하우 시 진교배배수펌프장을 통해 남해로 강제배수 중이나 배수용량이 부족하여 내수침수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1. 8. 3. ~ 2021. 8. 22.(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1. 8. 3. ~ 2021. 8. 22.(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화포지구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일원	침수위험	가	263,846	화포지구는 진교배수장 우수지의 퇴적으로 우수지 용량이 부족하여 내수침수가 발생하며, 화포마을을 관류하는 화포안골소하천과 화포서리소하천은 전구간 제방고가 부족하여 소하천 월류피해가 발생하는 실정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화포	2023년 ~2027년	13,140	- 소하천 정비 L = 3.07km - 교량 11개소 - 우수지 준설 V = 161,000m ³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 전화 : 055) 880-2513 팩스 : 055) 880-25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의견 제출서 및 지구지정도면 1부.
2. 편입토지 세목조서 1부 . 끝.

하동군 공고 제2021-1234호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제안 이유 : 현실에 맞는 당직 운영을 위함
3. 주요 내용
 - 전 읍면 일직 재택당직으로 전환(안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개정)
 - 재택당직 근무자의 당직수당 지급 기준 신설(안 제6조2 제2항 신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64, FAX 880-2159, yeseul1570@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발생 등으로 3시간 초과 출근하여 비상근무한 경우에는 1일당 30,000원의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1]

기관별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제6조제2항관련)

기 관 별	숙 직	일 직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사령 : 당직반장 대행 ○ 당직반장 : 6급 담당 1명 ○ 당직반원 : 직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사령 : 5급 또는 주무 담당 1명 ○ 당직반원 : 직원 2명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재택당직 포함) :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 : 1명

<개정안>

[별표]

기관별 당직근무자 편성기준(제6조제2항관련)

기 관 별	숙 직	일 직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사령 : 당직반장 대행 ○ 당직반장 : 6급 담당 1명 ○ 당직반원 : 직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사령 : 5급 또는 주무 담당 1명 ○ 당직반원 : 직원 2명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 당직(재택당직 포함) : 1명	○ 당직(재택당직 포함) : 1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당직수당) (생 략)</p> <p><신 설></p>	<p>제6조의2(당직수당)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해, 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발생 등으로 3시간 초과 출근하여 비상근무한 경우에는 1일 당 30,000원의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u></p>

하동군 공고 제2021 - 1240호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한 양식장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하 동 군 수

□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 종	어 장 위 치	면 적 (ha)	면허일자	면허기간	양식업권자	비 고
하동양식 제50호	패 류 양식업	바닥식 (살포식)	새꼬막	진교면 양포리 지 선	15	2021.08.06	2021.08.08 2031.08.07	양 * 어촌계장	하동양식 제11호 재개발
하동양식 제51호	어류등 양식업	가두리식	어 류	금남면 송문리 지 선	1	2021.08.06	2021.08.16 2031.08.15	이*석 외 2	하동양식 제27호 재개발
하동양식 제52호	어류등 양식업	가두리식	어 류	금남면 대송리 지 선	1	2021.08.06	2021.08.16 2031.08.15	지*진 외 2	하동양식 제29호 대체개발

□ 양식업의 제한 또는 조건

-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양식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물은 본인 부담으로 철거 하여야함.